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 12. 13.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2018년 12월 6일

나.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18년 12월 10일

라. 상정일자: 제21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제10차 행정위원회(2018. 12. 1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국장 김인문)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영등포의 변화와 도약을 중점 추진하기 위한 미래비전추진단 및 부서를 신설하여 행정기구와 분담 사무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구정 핵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4급상당 한시기구인 ‘미래비전추진단’ 신설 (안 제3조, 제5조)
- 민선7기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부서 신설 및 통합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8조)
 - 미래비전추진단의 소통기획과, 사회적경제과 신설

- 재정국의 일자리경제과 신설(지역경제과+일자리정책과)
- 복지국의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복지과 신설
- 수요자 중심의 알기쉬운 명칭 변경(안 제3조, 안 제10조)
 - 안전건설국 → 안전교통국
- ‘4차산업시대’ 대비를 위한 교육방향의 전환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안 제5조)
 - 교육지원과 → 미래교육과
-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분장사무 조정(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10조)
 - 자원봉사(복지국 → 행정국)
 - 공공용지의 사용허가와 점용료 부과·징수(생활환경국 → 재정국)
 - 토지의 사용·수용에 따른 보상(생활환경국 → 도시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최광묵)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미래의 환경변화와 행정수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조직성과를 최대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개정안의 주요내용(현황포 참조)을 살펴보면,

※ 주요내용 현황표

부서 신설	▶ 미래비전추진단	(안 제3조)
	▶ 소통기획과, 사회적경제과	(안 제5조)
	▶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복지과	(안 제8조)
부서 통합	▶ 지역경제과+일자리정책과 ⇨ 일자리경제과	(안 제7조)
부서 명칭변경	▶ 교육지원과 ⇨ 미래교육과	(안 제5조)
	▶ 안전건설국 ⇨ 안전교통국	(안 제3, 11조)

- 안 제3조에서는 미래비전추진단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미래비전추진단에 소통기획과, 사회적경제과를 신설하고, 교육지원과를 미래교육과로 재편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경제과와 일자리정책과를 통합하여 일자리경제과를 신설하였으며,
- 안 제8조에서는 가정복지과와 다문화지원과를 보육지원과와 아동청소년복지과로 통합 및 재편하여 출산 및 보육, 청소년 아동, 외국인 다문화 정책추진시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 안 제11조에서는 안전건설국을 안전교통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 국간 업무 이관사항으로는,
 - 안 제5조에서는 미래비전추진단 소관업무에 구정의 기획·조정, 사회적경제 활성화, 교육정책 등을 신설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는 행정국 소관업무에 찾아가는 자원봉사, 동주민센터 업무 총괄을 추가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는 재정국 소관업무에 의회협력, 공공용지의 사용허가와 점용료 부과·징수를 추가하였으며,
 - 안 제8조에서는 복지국 소관업무에 여성정책, 보육, 출산장려, 아동친화도시, 드림스타트, 고령화 대책 등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 안 제9조에서는 생활환경국 소관업무 중 공공용지의 사용허가와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토지의 사용·수용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을 각각 재정국과 도시국으로 이관하였으며,
 - 안 제11조에서는 안전건설국 소관업무에 하천시설 사업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업무일원화를 통한 행정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코자 하였음
-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으로 현재, 8국(소), 2담당관, 35과, 2전문위원, 18동, 219팀이, 2019년 1월부터, 8국(소), 1단, 1담당관, 36과, 2전문위원, 18동, 222팀으로 조정되어 1개의 단이 신설되고 3개의 팀이 증가됨.
- 본 개정 조례안은,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와 미래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구정목표의 효율적 추진과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되며, 법체계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행정수요의 질적, 양적변화가 매우 급격하고도 심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직관리의 탄력적 대응은 무엇보다 중요한 바, 조직관리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체계화하고, 문제점을 규명하며,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강구하는 상시화된 노력이 요청되는 바임. 또한, 우리구 특성에 기초하여 조직을 관리하고, 이를 통해 조직성과를 최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사무의 성격과 업무량의 적정 분담을 통하여 조직간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 행정력을 낭비하는 요인이 없는 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고려한 내실 있는 조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69 호
----------	--------

제출연월일: 2018. 12.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영등포의 변화와 도약을 중점 추진하기 위한 한시기구인 미래비전추진단 및 부서를 신설하여 행정기구와 분담사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정 핵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4급상당 한시기구인 ‘미래비전추진단’ 신설(안 제3조, 제5조)

나. 민선7기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부서 신설 및 통합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8조)

- 1) 미래비전추진단내 소통기획과, 사회적경제과 신설
- 2) 재정국내 일자리경제과 신설(지역경제과와 일자리정책과 통합)
- 3) 복지국내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복지과 신설

다. 수요자 중심의 알기쉬운 명칭 변경(안 제3조, 안 제11조)

- 1) 안전건설국 → 안전교통국

라. ‘4차산업시대’ 대비를 위한 교육방향의 전환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안 제5조)

- 1) 교육지원과 → 미래교육과

마.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분장사무 조정(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10조)

- 1) 의료특구사업(기획담당관 → 보건소)
- 2) 자원봉사(복지국 → 행정국)
- 3) 공공용지의 사용허가와 점용료 부과·징수(생활환경국 → 재정국)
- 4) 토지의 사용·수용에 따른 보상(생활환경국 → 도시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원안동의

라. 입법예고(2018. 11. 28. ~ 12. 3. / 5일간) 결과

: 행정국, 재정국으로부터 의견이 제출되어 반영하고자 함

의견 제출부서	제출의견	조치내용
행정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조제2항제3호에 <u>찾아가는 동주민센터</u> 업무 총괄 추가 ○ 사유: 동혁신팀 존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반영 서울시 찾동 2단계 추진확대로 ‘동혁신팀’이 존치하게 됨에 따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업무 총괄’을 복지국에서 행정국으로 원안 변경
재정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조제2항제1호에 <u>의회협력</u> 추가 ○ 사유: 의회업무가 행정국 ‘총무과’에서 재정국 ‘재정관리과’로 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반영 제7조제2항제1호: 예산, 대내외 평가, 통계, <u>의회협력</u>, 법제심사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분장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단장 및 담당관·과장·동장의 직급 등) ① 구 본청 국장·단장의 직급,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구 본청·보건소의 담당관·과장 등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구 본청·보건소·동의 담당관·과장·동장 등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구 본청

제3조(국·단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미래비전추진단, 행정국, 재정국, 복지국, 생활환경국, 도시국, 안전교통국을 둔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부구청장 밑에 감사담당

관을 둔다.

제5조(미래비전추진단) ① 미래비전추진단에 소통기획과, 사회적경제과, 미래교육과를 둔다.

② 미래비전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의 기획·조정, 구정비전개발, 주민소통, 국제금융지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역협치, 청년지원에 관한 사항
3. 교육정책, 도서관운영, 학교지원, 과학육성 및 평생교육, 혁신교육지구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총무과, 홍보전산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를 둔다.

②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사관리, 인사, 직원능력개발 및 후생복지, 대외교류에 관한 사항
2. 구정홍보, 구정의 정보화, 전산운영 및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3. 동 행정 지원, 자원봉사, 자치회관 운영지원, 사회단체 지원 총괄,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사항,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업무 총괄
4. 문서관리, 민원처리, 가족관계등록 및 여권, 통합 인허가에 관한 사항
5. 문화재 및 문화·예술, 생활체육, 체육시설,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제7조(재정국) ① 재정국에 재정관리과, 재무과, 일자리경제과, 징수과, 부과과를 둔다.

② 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 대내외 평가, 통계, 의회협력, 법제심사에 관한 사항
2. 국·공유재산관리, 공공용지의 사용허가와 점용료, 계약, 물품관리, 지출에 관한 사항
3. 일자리창출·지원, 지역경제진흥, 유통, 전통시장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4. 구세입 총괄 및 지방세 징수, 세외수입 총괄에 관한 사항
5. 지방세 부과,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관한 사항

제8조(복지국) 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

복지과, 어르신복지과를 둔다.

② 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서비스 자원개발·연계·관리,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에 관한 사항
2. 생활보장, 자활사업, 장애인복지,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
3. 보육, 여성정책 및 출산장려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 등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및 드림스타트, 외국인 및 다문화 업무에 관한 사항
5. 어르신 복지시설, 고령화 대책에 관한 사항

제9조(생활환경국) ① 생활환경국에 가로경관과, 청소과, 환경과, 푸른도시과를 둔다.

② 생활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점상·가로정비 및 전문건설업 관리, 옥외광고물관리에 관한 사항
2. 생활폐기물처리 및 자원재활용, 청소대행업자 지도·감독, 환경미화원,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한 사항
3. 대기·수질·토양오염 관리,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소음·진동대책, 에너지 관리에 관한 사항
4. 공원의 개발 및 관리 녹지보전, 조경계획·조경시설 및 생태계복원에 관한 사항

제10조(도시국) ① 도시국에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를 둔다.

② 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동주택관리, 주택개량, 도시재개발·재건축, 무허가건축, 주택임대사업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의 수립·조정 및 결정, 재개발사업(도시정비형), 주거환경개선(관리형)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3. 정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건축물대장 관리, 건축허가·착공·준공, 건축물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토지관리·토지조사 및 지적, 개별공시지가, 도로명 주소 사업추진, 토지의 사용·수용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제11조(안전교통국) ① 안전교통국에 도시안전과, 도로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과를 둔다.

② 안전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종합방재계획 수립, 재난 예방, 재난 복구대책 및 민방위에 관한 사항
2. 도로계획 수립·조정,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도로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3. 하수사업, 하천·유수지, 수방대책, 배수펌프장과 수문 기전설비에 관한 사항
4. 교통행정, 자동차와 건설기계등록, 교통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5. 주·정차지도 단속, 교통시설 설치, 주차장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2조(보건소의 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113조, 「지역보건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설치한다.

② 보건소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13조(보건소장) ① 보건소에 보건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소관 업무와 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4조(보건소) 보건소에 보건지원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위생과를 둔다.

제4장 하부행정기관

제15조(직무) ①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주민등록 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반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② 동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복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

치회관을 운영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관리한다.

③ 동은 동복지기능 강화를 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를 한다.

제16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7조(관할구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그리고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행정동의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5조에 따른 미래비전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가정복지과장”을 “보육지원과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가정복지과장”을 “보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정복지과장”을 “보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가정복지과장”을 “보육지원과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건설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건설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및 제4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각각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가정복지과장”을 “아동청소년복지과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중 “기획담당관”을 “소통기획과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안전건설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안전건설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안전건설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안전건설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 중 “안전건설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안전건설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⑯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2호마목의 “기획담당관”을 “미래비전추진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라목의 “안전건설국”을 “안전교통국”으로 한다.

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의 “행정국장”을 “미래비전추진단장”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